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 청원번호 : 제28호
- 청 원 자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60, 이보창 외 1,082명
- 소개의원 :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접수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6일

II . 청원요지

- 강남구 세곡2지구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율현초에 48명만 수용하는 병설유치원 하나만 있는바, 향후 수서 역세권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 동 지역의 유치원생 수용률은 더욱 악화될 것임. 따라서 율현성당 옆 SH소유 문화체육공원부지에 단설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청원함.

III .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강남구 세곡2지구보금자리는 다자녀가구 등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규모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율현초병설유치원 한 곳 만 있음. 더욱이 향후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에 신혼희망타운 등 2,531가구가 입주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공

립단설유지원 설립계획은 없음. 따라서 SH소유의 문화체육공원부지를 활용하여 공립단설유지원의 신설이 필요함.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원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20년 8월 20일 김태호 의원의 소개로 이보창 외 1,082 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28호로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 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세곡2지구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이 율현초병설유치원 1곳 밖에 없으며, 현재 있는 공립유치원만으로는 향후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유아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SH소유의 문화체육공원부지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강남구 세곡지역은 행정동 경계상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263,814 m^2)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940,361 m^2),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771,121 m^2)가 순차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며, 현재 인근 수서동 일대는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386,390 m^2)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동 지역은 지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더불어 유아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동 청원의 취학권역(강남서초 제5취학권역)은 유아수용계획상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해당 취학권역에 공립유치원 정원을 확충함으로써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바라는 동 청원은 취지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검토

- 동 청원은 현재 세곡2지구의 공립유치원이 48명 규모의 율현초병설유치원만 있어 원아들의 유치원 수용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현재 동 권역¹⁾은 유아수용계획상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정원이 1,485명 부족한 상황이며, 취원대상 대비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은 21.1%에 불과하고 사립유치원 정원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유아수용률도 62.2%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1] 세곡지역 중장기학생배치계획

학년도	취원 대상 (A)	유치원 정원(B)			취학수요를 반영한 취원 유아수						유아 수용률 (B/A)
					유치원 취학수요(D)			과부족(B-D)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2020	2,962	624	1,219	1,843	2,109	406	2,515	△1,485	813	△672	62.2

- 그러나 현재 동 권역의 공립유치원은 서울세명유치원을 비롯해 단설유치원 2개원과 율현초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4개원 등 총 6개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강남유정유치원을 비롯해 총 10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강남서초 제5취학권역: 일원본동, 일원1~2동, 수서동, 세곡동

- 더욱이 율현초병설유치원은 7학급, 128명 정원의 규모로 현재 101명(2020.8.21.기준)이 재학중에 있어 충원률이 78.9%에 불과한바, 동 청원의 내용과 달리 전염병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유아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표-2] 강남서초 제5취학권역 내 유치원 현황(2020학년도)



<강남5권역 유치원 현황>

<청원 대상지 인근 유치원 현황>

설립별	기관명	주소	학급수	모집정원	현원	충원률	부지와의 거리
공립유	서울세명유	강남구 자곡로 55	6	112	105	93.8%	2km
	서울은곡유	강남구 헌릉로569길 41	8	154	122	79.2%	1.6km
	대왕초병설유	강남구 헌릉로618길 8	3	64	47	73.4%	1.1km
	수서초병설유	강남구 광평로51길 46	5	102	41	40.2%	2.3km
	율현초병설유	서초구 태봉로 59	7	128	101	78.9%	460m
	자곡초병설유	강남구 자곡로 150	3	64	33	51.6%	1.2km
	공립유 소계(6개원)			32	624	449	72%
사립유	강남유정유	강남구 광평로34길 17	19	429	387	90.2%	2km
	리라유	강남구 광평로19길 15	4	76	74	97.4%	2.8km
	반디유	강남구 광평로47길 17	4	92	92	100%	2.1km
	소망유	강남구 광평로56길 11	3	32	32	100%	1.8km
	신아유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4	120	107	89.2%	3.8km
	오즈의마법사유	강남구 헌릉로618길 14	9	200	169	84.5%	1.2km
	이화유	강남구 개포로109길 5	4	120	78	65%	4.1km
	푸른유	강남구 일원로14길 25	5	150	145	96.7%	3.2km
사립유 소계(8)			52	1,219	1,084	88.9%	
합 계(14개원)			84	1,843	1,533	83.2%	

- 또한 해당 권역은 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가칭)세곡2초·중 이음학교(통합운영학교)가 신설될 예정에 있으며, 여기에 7학급, 132명 규모의 병설유치원이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3] 가칭)세곡2초·중학교 신설 규모

학교명	학교현황		
	개교(완공) 예정시기	학급수 (특수)	학생수 (급당)
(가칭) 세곡2초·중학교	2023.3	유 7(1) 초19(1) 중19(1)	유 132 초 507 중 533
	위치	강남구 자곡동 102	

* (유치원) 2023년 입주시 기준, (초등) 2026년 학생수 최대년도 기준, (중등) 2025년 완성학급 기준

- 한편, 동 청원은 세곡동 성당 옆 SH 공원부지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 가능한지 여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동 청원의 대상지인 강남구 율현동 72-1답 일원의 경우 지구계획상 교육시설이 아닌 문화체육시설로 지정²⁾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청원 대상지인 해당 토지에 학교시설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른 지구계획을 변경³⁾하여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0호,(2019.6.24.)

3)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야 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전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종합의견

- 현재 동 청원의 강남 세곡2지역은 보금자리 대규모단지 조성으로 인해 총 2,921세대의 입주완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병설유치원의 충원률이 78.9%에 불과하고, 인근 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 고려하더라도 가칭)세곡2초·중 신설에 따른 병설유치원 설립이 추진 중임을 고려하였을 때 단설유치원의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동 청원이 요구하는 해당 지역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학교용지가 아닌 SH의 문화체육시설이므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 및 관련 부지 매입 예산의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강남서초 5권역의 유아수용률(어린이집 정원 포함)이 충분하고(118.3%), 수서역세권 개발지역 내 병설유치원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유아수용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행정관리담당관-10904,2020.8.27.)
- 하지만 동 취학권역 내 공립유치원의 취학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구에 대한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율현초병설유치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유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⑤ <생략>

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이상으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0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20. 1. 2.] [서울특별시규칙 제33호, 2020. 1. 2.,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